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예고

####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상담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  
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soluck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사업
2. 직무연수 사업
3. 상담 등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일 등) ① 센터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담은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이용일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평가) 교육감은 제3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대학, 병원, Wee센터 및 전문상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 관계 법령

##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 특별법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에듀힐링센터 운영
- 관련 조문 : 해당없음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에듀힐링센터 운영 확대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시청)에서 동사업 관련 예산 확보

나. 추계 결과 : 1,911,390천원 /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자체 / 특교

##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가. 교육부에서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현재 대전시교육청의 단독 사업임)
- 나. 교육부와 지자체의 지원 필요

## 5. 작성자 : 교육정책과 성명 김선희 (☎480-7516)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379,944	340,498	370,948	395,000	425,000	1,911,390
자체수입	379,944	340,498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특교		100,000 (미정)	100,000 (미정)	200,000 (미정)	200,000 (미정)	600,000
전입금(시청)						
세 출	379,944	340,498	370,948	395,000	425,000	1,911,390
에듀힐링센터구축	155,000	30,000	10,000	10,000	10,000	215,000
인건비	30,249	60,498	60,948	65,000	65,000	281,695
운영비	194,695	250,000	300,000	320,000	350,000	1,414,695
재원 조달	379,944	340,498	370,948	395,000	425,000	1,911,390
의존 재원	소 계					
	특교					
	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379,944	340,498	370,948	395,000	1,911,390
	자체수입	379,944	340,498	370,948	395,000	1,911,3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